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김산업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항만안전보안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진해신항 적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비 방사능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연구사 3명),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와 적합성 심사 및 국가해양관측망 확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양식장 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공항 수산물 전용 검색대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어업관리단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인력 1명(9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 인력 7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국립수산물과학원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력 1명(6급 1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등 소속기관 인력 25명(5급 1명, 6급 8명, 7급 6명, 8급 5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물안전과를 폐지하고,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인력 중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응 인력 1명(5급 1명) 및 가거도항 복구공사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5.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8항제11호 및 제12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금산업의 안전·품질관리 제도의 운영
14.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15. 염전 생산시설의 개선과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한 사항
16. 염업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금 관련 전문인력·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8조제17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7항제1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7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수산생물질병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0. 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의 운영 및 관리
21.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제8조제17항제22호 중 “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을 “수산생물질병관리 관련”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수산물안전과·검역검사과·품질관리과”를 “운영지원과·검역검사과·품질관리과”로, “기술서기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 검역검사과장”을 “기술서기관으로, 검역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11항의 “별표 28의2”를 “별표 28의3”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둔다.

별표 2의 “충청남도 서천군”을 “전라북도 군산시”로 한다.

별표 16의 총계 “589”를 “59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9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을 “3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1”을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4”를 “198”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

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4”를 “208”로 하며,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0”을 “29”로 하고, “행정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를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로 하며,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를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로 하고,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의 “3”을 “4”로 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와 전화상담운영서기보의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의 “9”를 “8”로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의 총계 “595”를 “60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60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을 “3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1”을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2”를 “206”으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9”를 “20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3”을 “32”로 하고, “행정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를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로 하며,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를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로 하고,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의 “3”을 “4”로 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와 전화상담운영서기보의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의 “9”를 “8”로 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 총계 “307”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307”을 “30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를 “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9”를 “25”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3”을 “82”로 하며,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8”을 “79”로 하고,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5”를 “57”로 하며,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0”을 “32”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를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의 “1”을 삭제한다.

별표 18의2를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의 총계 “253”을 “255”로 하고, 일반직 계 “253”을 “255”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를 “18”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

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3”을 “77”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31”을 “30”으로 한다.

별표 20의 총계 “254”를 “2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54”를 “2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를 “18”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3”을 “77”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31”을 “30”으로 한다.

별표 21의 총계 “872”를 “868”로 하고, 일반직 계 “872”를 “868”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8”을 “167”로 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4”를 “232”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3”을 “312”로 한다.

별표 21의2의 총계 “874”을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74”를 “870”으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

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8”을 “167”로 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6”을 “234”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3”을 “312”로 한다.

별표 22의 총계 “153”을 “152”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1”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24의 총계 “1,270”을 “1,2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70”을 “1,263”으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3”을 “40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8”을 “347”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23”을 “221”로 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의 “114”를 “117”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의 “11”을 “8”로 한다.

별표 25의 총계 “1,272”를 “1,265”로 하고, 일반직 계 “1,272”를 “1,265”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4”를 “4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0”을 “349”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7”을 “215”로 하고,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의 “114”를 “117”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의 “11”을 “8”로 한다.

별표 27의 총계 “621”을 “6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을 “6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4”를 “613”으로 한다.

별표 27의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28의 총계 “27”을 “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26”으로 하며, 5급이하 “26”을 “25”로 한다.

별표 28의2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28의3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8의4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표 29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4조의3 관련)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15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의 제1호 및 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6조제1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2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8조제17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12조제2항·제4항, 별표16·별표17·별표18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9항·제10항·제11항, 별표 27·별표28·별표28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

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6 및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8의2를 적용한다.

제3조(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제9항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7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26일까지는 별표 2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0항에 따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8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26일까지는 별표 28의2를 적용한다.

③ 제42조제11항에 따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8의3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26일까지는 별표 28의4를 적용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0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0명(5급 3명, 6급 9명, 7급 7명, 8급 5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6의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58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일반직 계	585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	194

산연구관	
전산주사	1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5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9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20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
해양수산연구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해양수산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8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공업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

[별표 17의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595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일반직 계	591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 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202

· 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전산주사	1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 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0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 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 구사	32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20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
해양수산연구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해양수산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8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공업전 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313
일반직 계	3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9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5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9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7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4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2
사무운영서기보	3

[별표 27의2]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3조제1항 관련)

총계	621
일반직 계	62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614

[별표 28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3조제2항 관련)

총계	27
일반직 계	27
임기제 4급(원장)	1
5급 이하	26

[별표 28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1항 관련)

총계	48
일반직 계	48
임기제 4급(원장)	1
5급 이하	4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3조제3항 관련)

총계	50
일반직 계	50
임기제 4급(원장)	1
5급 이하	4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④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1.~9. (생략)	1. (현행과 같음)
<u>10. 해양수산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u>	<u><삭 제></u>
11.~17.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⑥~⑩ (생략)	⑥~⑩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정책실) ①~⑦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⑦ (현행과 같음)
⑧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u>삭제</u>	<u>11. 소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12. <u>삭제</u>	<u>12. 소금산업의 안전·품질관리 제도의 운영</u>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20. 삭제	20. 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의 운영 및 관리
14. 삭제	14.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 기 계획의 수립·시행	21.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법 령의 제·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 등 총괄·조정	21.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 도의 운영
15. 삭제	15. 염전 생산시설의 개선과 제 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 한 사항	22. 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 국 제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22. 수산생물질병관리 관련 --- -----
16. 삭제	16. 염업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31. (생략)	23.~31. (현행과 같음)
17. 삭제	17. 소금 관련 전문인력·단체 의 육성 및 지원	<18>~<19> (생략)	<18>~<19> (현행과 같음)
18.~24. (생략)	18.~24.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생략)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현행과 같음)
⑨~<16> (생략)	⑨~<16> (현행과 같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운 영지원과·수산물안전과·검역 검사과·품질관리과 및 수산방 역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 검 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및 수산방역과장은 서기관·기술 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 로 보한다.	② ----- 운영 지원과·검역검사과·품질관리 과----- ----- 기술서 기관으로, 검역검사과장, ----- ----- ----- -----
<17>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11. (생략)	1.~11. (현행과 같음)	④ 수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삭 제>
12.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국제 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삭 제>		
13.~15. (생략)	13.~15. (현행과 같음)		
16. 수산물 안전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7.~18. (생략)	17.~18. (현행과 같음)		
19.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9. 수산생물질병관리 관련 제 도의 운영		

1. 수산물 식품안전사고 대응
2.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운영과 수산물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도·감독
5. 수산물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의 개발
6.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7.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련 제도의 운영
8. 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의 운영 및 관리
9.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10. 수출입수산물 검역 관련 제도의 운영
11. 수출수산물 검사 관련 제도의 운영
12.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3.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대응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운영
16.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17. 수출수산물의 안전관리 지원과 수출상대국의 위생안전 정보의 수집·관리
18. 수출수산물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사
1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에 관한 업무
20. 소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금산업의 안전·품질관리 제도의 운영
22.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23. 염전 생산시설의 개선과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한 사항
24. 염업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소금 관련 전문인력·단체 의 육성 및 지원	
26. 소금 이력관리제 관련 업무 의 총괄	
2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하는 사항 중 수산물 안 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⑩ (생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⑩ (현행과 같음)
⑪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8의2와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 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 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⑪ -----별표 28의3과 같다. ----- ----- ----- ----- ----- ----- -----.
⑫~⑬ (생략)	⑫~⑬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해양수산 분 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제46조(한시정원) ①----- ----- ----- -----

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 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 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 2024년 12월 31 일까지-----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 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 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④ ----- ----- ----- ----- 2024년 12월 31 일----- -----.
⑤~⑬ (생략)	⑤~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u>589</u>	<u>598</u>	+9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u>585</u>	<u>594</u>	+9
·	·	·	
·	·	·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1</u>	<u>32</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물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51</u>	<u>53</u>	+2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물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u>194</u>	<u>198</u>	+4
·	·	·	
행정주사·해양수산물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204</u>	<u>208</u>	+4
행정주사보·해양수산물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30</u>	<u>29</u>	△1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	·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3</u>	<u>4</u>	+1
·	·	·	
·	·	·	
·	·	·	
<삭제>	<u>1</u>	<삭제>	△1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595	604	+9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591	600	+9
·	·	·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	32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1	53	+2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202	206	+4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9	203	+4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3	32	△1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	·	
행정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4	+1
·	·	·	
·	·	·	
·	·	·	
<삭제>	1	<삭제>	△1
사무운영서기보	9	8	△1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307	304	△3
일반직 계	307	304	△3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3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	3	△1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9	25	△4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3	82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8	79	+1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5	57	+2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	·	
·	·	·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0	32	+2
·	·	·	
<삭제>	1	<삭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9]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본문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 계	253	255	+2
일반직 계	253	255	+2
·	·	·	
·	·	·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	18	△1
·	·	·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3	77	+4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31	30	△1
·	·	·	
·	·	·	
·	·	·	
·	·	·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단서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 계	<u>254</u>	<u>256</u>	+2
일반직 계	<u>254</u>	<u>256</u>	+2
·	·	·	
·	·	·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9</u>	<u>18</u>	△1
·	·	·	·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3</u>	<u>77</u>	+4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u>31</u>	<u>30</u>	△1
·	·	·	
·	·	·	
·	·	·	
·	·	·	
·	·	·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본문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 계	<u>872</u>	<u>868</u>	△4
일반직 계	<u>872</u>	<u>868</u>	△4
·	·	·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u>168</u>	<u>167</u>	△1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234</u>	<u>232</u>	△2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u>313</u>	<u>312</u>	△1
·	·	·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874	870	△4
일반직 계	874	870	△4
·	·	·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8	167	△1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36	234	△2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3	312	△1
·	·	·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
(제42조제4항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153	152	△1
·	·	·	
·	·	·	
·	·	·	
·	·	·	
일반직 계	42	41	△1
·	·	·	
·	·	·	
·	·	·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21	20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u>1,270</u>	<u>1,263</u>	△7
일반직 계	<u>1,270</u>	<u>1,263</u>	△7
·	·	·	
·	·	·	
·	·	·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13</u>	<u>409</u>	△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48</u>	<u>347</u>	△1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223</u>	<u>221</u>	△2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14</u>	<u>117</u>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1</u>	<u>8</u>	△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1,272	1,265	△7
일반직 계	1,272	1,265	△7
·	·	·	
·	·	·	
·	·	·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 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 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4	410	△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 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0	349	△1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 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 ·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 호서기	217	215	△2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 ·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운 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 호서기보	114	117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운영서기보	11	8	△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7]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u>621</u>	<u>620</u>	△1
일반직 계	<u>621</u>	<u>620</u>	△1
·	·	·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4</u>	<u>613</u>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8]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0항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u>27</u>	<u>26</u>	△1
일반직 계	<u>27</u>	<u>26</u>	△1
·	·	·	
5급 이하	<u>26</u>	<u>25</u>	△1